I. 머리말

金融再保險은 보험회사가 財務管理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再保險契約을 뜻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로이드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미국 등 많은 국가로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再保險商品이다. 세계 재보험시장은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배상책임보험의 集積損害(accumulative loss)로 인한 保險危機招來, 풍수재, 지진과 같은 巨大自然災害(catastrophic loss)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Hard Market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擔保能力을 확대하고 인수한 보험리스크(insurance risk)를 헷지할 수단으로 保險派生商品(insurance derivatives)[1]이 개발되었고 아울러 금융재보험도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다.

금융재보험은 일반재보험과는 달리 원보사의 필요시에 재보험자가 금융지원을 하고 추후 원보사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되돌려 받는 금융지원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생성된 금융재보험은 미국을 중심으로 신장하여 영국, 독일, 스위스, 버뮤다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나, 보험규제와 회계상의 규제 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와 같은 금융재보험의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막 재보험거래가 자유화된 우리나라 재보험산업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자유화된 시장이 아니고 이제 자유화를 위해 첫 발을 내딛은 상태이다. 재보험의 경우 1997년 4월에 "國內社 優先出再制度"와 "保

---

1) 보험파생상품은 1992년말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Chicago Board of Trade)에 '대재해보험선물/옵션(catastrophe insurance futures and catastrophe insurance options)'이 상장되었으며, 이들은 손해율 또는 지급보험금과 특정 수치를 지표로 하여 선물계약이이나 옵션계약형태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보험선물이다. 현재 운영중인 상품은 다음 3가지이다. 전미대재해보험계약(National Catastrophe Insurance Contracts)은 대상보험종목의 사분기의 손해율을 지표로 한 파생상품이며, 동부대재해보험계약(Eastern Catastrophe Insurance Contracts)은 미국 동부 21개주와 워싱톤D.C.에서 운영중이며, 중서부대재해보험계약(Midwestern Catastrophe Insurance Contracts)은 1993년 5월 7일에 추가로 상장된 것으로서 미국 중서부 17개주에서 운영중인 상품이다. 보험옵션의 시장규모는 1996년 9월기준으로 CBOT 전체시장규모(39,701,610달러)의 0.03%에 불과하다.
자료: http://www/cbot.com/mvosep96.htm

險料率求得에 관한 協定"이 완전폐기[2]와 ENT제도의 폐지로 인해 1962년[3]부터 정부의 재보험사 육성정책에 힙입어 성장한 국내 유일한 대한재보험사는 담보력과 금융재보험과 같은 신상품을 갖춘 해외 재보험사와 경쟁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재보험의 의의 및 생성배경과 기능, 일반 재보험계약과의 차이점, 금융재보험의 계약형태 및 종류, 주요국의 금융재보험 동향을 분석하여 금융재보험의 향후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金融再保險의 意義 및 特徵

1. 金融再保險의 意義 및 生成背景

가. 金融再保險의 意義

再保險은 어떤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이하 '一般再保險(traditional reinsurance)'이라 한다). 우리나라 「商法」에서는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이 손해보험계약이든 인보험계약이든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상법 제661조), 재보험계약에 대한 규정은 상법상의 책임보험계약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726조). 즉 재보험계약은 원보험자의 引受危險을 다른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계약으로서 재보험자의 책임을 명확히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生産物賠償責任保險 등과 같은 Long Tail종목에서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 재보험사 뿐만 아니라 원보험사의 경영에 큰 어려움이 주는 사례도 발생

2)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자잉여금 및 재보험관리규정(손보 2234-180, 1987.3.18)』중 재보험관련조항은 완전삭제되고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자잉여금 관리규정』으로 되었다.
3) 재보험을 규정한 최초 법규는 1962년에 제정되어 1977년에 『보험업법』에 통합된 「대한재보험공사법」이다. 「대한재보험공사법」제16조(국내재보험) ①에 의하면 "대한민국 내의 모든 보험회사는 그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보험을 붙여야 하며 공사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